

울산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1가합173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4. 3 선고 2023나1110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1가합17347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창호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조유현

변론 종결 2023. 3. 15.

판결 선고 2023. 4. 26.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23. 4. 26.까지는 연 5%, 2023. 4. 2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30.부터, 4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39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E 공장용지 8213m²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울산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의 경매신청채권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6. 11. 30. 설립된 회사로서 2017. 3. 20.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G, H 등은 D에 대한 투자자들(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이다. 나. D(이 사건 투자자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I(상호는 'J')과 사이에 제3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이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7. 7. 24. D의 대표이사 G를 원고의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원고의 발생 주식 20,000주는 모두 G 소유였고, 자본금은 1억 원이었다. 다. D와 I, 원고는 2017. 8. 7.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 26억 원으로 입찰하기로 하고, 입찰보증금과 잔금은 D가, 취득세 등은 I이 각 부담하며, 원고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경락자금

2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되, 대출금액이 21억 원에 못 미치면 나머지 부분은 I이 부담하고, 배당종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원고의 주주와 대표이사를 I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26억 5,000만 원에 낙찰받고 2017. 9. 14.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자본금과 대표이사 G의 신용이 부족하여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G가 2017. 9. 28. 자신이 소유하던 원고 주식 20,000주 중 9,000주씩을 피고 C와 H에게, 2,000주를 피고 B에게 각 양도하였다. 당시 G와 피고 C 및 H 사이에 각 매매대금을 4,500만 원(1주당 대금은 액면금액인 5,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G와 피고 B 사이에는 매매대금을 1,000만 원(1주당 대금은 액면금액인 5,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G는 2017. 9. 28. 원고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와 H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또한 원고의 자본금이 2017. 9. 28.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되면서, 피고 C와 H이 각 36,000주(주금 각 1억 8,000만 원), 피고 B이 8,000주(주금 4,000만 원)의 신주를 인수(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라 한다)하여 피고 C와 H이 각 45,000주, 피고 B이 10,000주의 원고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1. 10. 주식회사 K(이하 'K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17억 원을 대출받고 D로부터 5억 원을 받아(I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D가 이를 I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지급하였다) 2017. 11. 30. 경락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 C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7. 9. 28. 원고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원고 L은행 계좌'라 한다)를, 2017. 11. 10. 원고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원고 K은행 제1계좌'라 한다)를, 2018. 1. 15. 원고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원고 K은행 제2계좌'라 한다)를 각 개설하였다.

사. 피고 C은 2017. 11. 30. 원고 K은행 제1계좌에서 1억 원을 '원고 L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바로 자신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이하 '피고 C의 1억 원 송금행위'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위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L은행 계좌로 이체된 1억 원과 함께 합계 2억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H은 2017. 12. 1.경 M과 N 명의의 계좌로 각 1억 원씩을 송금하였다.

아. I은 2018. 1. 15. 원고, D와 사이에 원고의 경락자금 중 D가 대여한 5억 원은 I이 2018. 5. 31.까지 상환하고, I이 원고의 K은행 대출금 17억 원 및 위 대여금 5억 원과 피고 C이 지출한 실비를 상환하고 원고를 완전히 인수하되, 위 대출금 17억 원의 이자도 I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2018. 1. 15.자 합의'라 한다).

자. 피고들은 2018. 3. 2. D와 사이에, 2018. 5. 30.까지 D가 원고의 이전을 요구하면 즉시 피고들이 주식양도증서 등 관련서류를 제공하고, D는 원고의 K은행 대출금 17억 원을 책임지고 상환하며 양자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그 밖에 피고들은 원고의 K은행 계좌 잔고를 D에 이전하고, D는 원고의 설립부터 발생한 모든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원고 인수, 인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G 등이 사건 투자자들은 피고 C의 1억 원 송금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형사고소사건'이라 한다), 대구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19. 8. 20. 피고들의 공모여부를 입증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해 보관자적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법검찰청 2019형제2129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C의 1억 원 송금행위 관련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들은 각 원고의 대표이사과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음을 기화로 공모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1억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I으로부터 받은 대출이자 등 횡령행위 관련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I은 2018. 1. 15.자 합의에 따라 2018. 1. 15.부터 2018. 11. 13.까지 원고의 K은행 대출이자 지급을 위하여 합계 71,283,085원을 원고 명의 계좌 또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 C은 '① 2018. 1. 15.자 1,050만 원(원고 주장 횡령행위 ①), ② 2018. 2. 28.자 1,000만 원(원고 주장 횡령행위 ②), ③ 2018. 3. 31.자 900만원(원고 주장 횡령행위 ③), ④ 2018. 8. 31.자 500만 원(원고 주장 횡령행위 ④), ⑤ 2018. 11. 13.자 900만 원(원고 주장 횡령행위 ⑤) 합계 4,350만 원'을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4,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주식인수 관련 주금 상환의무 이 사건 주식인수는 가장납입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주주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해당납입한 주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다른 주주인 H과 연대하여 이 사건 증자대금 4억 원 중 피고 C이 2017. 9. 29.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3억 9,6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C의 1억 원 송금행위가 원고에 대한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의 1억 원 송금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1억 원 송금행위는 원고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고 B이 이 사건 형사고소사건에서 피고 C이 원고의 실제 운영 및 자금 관리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계좌는 피고 C이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② H은 이 사건 형사고소사건에서 2017. 11. 30. 피고 C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 C이 2017. 9.경 충남 부여군 ○ 소재 토지의 경매물건 채권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 사건 투자자들 중 4명에게 소개를 해주었고, 약 3억 원으로 물건을 인수해 오는 과정에서 피고 C이 한 달 내에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몇 달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던 중 위 투자자들이 투자금 2억을 회수해가겠다고 하여 피고 C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 C 역시 이 사건 형사고소사건에서 '원고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한 것은 충남 부여군 토지 채권 매입에 사용된 것'이라 진술하였고, 이 사건 투자자들 중 1명이 위 부여군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H와 피고 C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C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낙찰대금 지급을 위해 H와 함께 7억 원을 마련하여 이를 원고 L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다시 원고 K은행 제1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7억 원에서 낙찰대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1억 원을 이 사건 투자자들의 다른 투자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이체한 것이므로 이 사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D 및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 C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억 원은 원고가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인바, 비록 피고 C이 이 사건 형사고소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형사고소사건은 이 사건 투자자들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므로, 설령 위 투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투자자들과 별개의 인격을 가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할 수는 없다.

다. 피고 C이 I로부터 받은 원고의 K은행 대출이자 등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I로부터 받은 원고의 K은행 대출이자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에 피고 B이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2018. 1. 15. 원고 L은행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8. 1. 25. 원고 L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원고 주장 횡령행위 ①), 2018. 2. 28. P(I 측)이 원고 K은행 제2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이 같은 날 원고 L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8. 3. 1. 원고 L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원고 주장 횡령행위 ②)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2017. 6. 30. 피고

C과 사이에, D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신청대리를 피고 C에게 위임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최고가매수인으로 확정되면 수수료로 5,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되, 1) 이 5,000만 원은 D가 양수한 채권을 22억 원에 매각할 경우의 수임금액이며, 위 채권을 21억 5,000만 원 이하에 매각할 경우에는 수임금액을 300만 원으로 하고, I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에는 매각잔금을 D가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수신청대리 수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은 위 매수신청대리 수임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수임료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2018. 1. 25.과 2018. 3. 1. 합계 2,000만 원(원고 주장 횡령행위 ①, ② 금액)을 원고 L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간 2,000만 원은 I이 원고 K은행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매수신청대리 수임계약에 따른 수임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횡령이라 볼 수 없다.

나) 갑 제14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2018. 3. 31. 원고 K은행 제2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9,001,400원이 이체된 사실(원고 주장 횡령행위 ③)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K은행 제2계좌를 I이 관리하였다거나 위 900만 원이 K은행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횡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갑 제14호증의 4 기재에 의하면 I이 2018. 8. 31.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위 돈 역시 피고 C이 원고가 받아야 할 K은행 대출이자 명목의 금원을 대신 받아 유용한 것이라 주장한다(원고 주장 횡령행위 ④). 그러나 을 제4호증(I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I은 2018. 1. 15.자 합의에 따라 K은행 대출이자 명목으로 2018. 1. 15. 1,050만 원, 2018. 2. 28. 1,000만 원, 2018. 4. 30. 1,000만 원, 2018. 5. 28. 1,000만 원, 2018. 11. 13. 900만 원을 원고 또는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일뿐, 2018. 8. 31. I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위 500만 원이 K은행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I이 2018. 8. 31. 송금한 500만 원은 피고 C이 원고가 받아야 할 돈을 대신 받았다거나 원고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라) 갑 제14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2018. 11. 13. C 명의의 계좌로 K은행

대출이자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원고 주장 횡령행위 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2, 4,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10. 2.부터의 원고 K은행 대출이자는 피고 C 명의 계좌에서 원고 K은행 제1계좌로 대출이자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납부된 것으로 보이고, I이 C 명의 계좌로 위 900만 원을 송금한 2018. 11. 13. 이후 대출이자 상당액으로 이체된 돈이 합계 1,720만 원에 이르므로, 위 I이 송금한 900만 원 역시 원고의 K은행 대출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피고 C이 유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인수 관련 주금 상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인수시 피고들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인수 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경락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과 대표이사의 신용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표이사 G가 소유하던 주식을 피고들과 H에게 형식적으로 양도하는 동시에 이 사건 증자를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 위와 같은 필요성에서 피고들과 H를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하고 이 사건 증자를 하게 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실제 주식대금이나 증자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 C은 2017. 9. 27. Q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2017. 9. 28. 피고 B에게 5,000만 원, H에게 4,500만 원, G에게 4,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직후 G에게 피고 B이 1,000만 원, H이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시 그 직후 G가 R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곧바로 R이 피고 C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017. 9. 28. 이 사건 증자가 이루어지면서 피고 B이 위와 같이 피고 C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나머지 4,000만 원을 원고 L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 C이 위와 같이 R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데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로부터 9,000만 원, T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원고의 위 계좌로 1억 8,000만 원, H에게 1억 8,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곧바로 H이 원고의 위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2017. 9. 29.

피고 C은 원고의 위 계좌에서 6,7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T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어서 원고의 위 계좌에서 3억 2,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회사 S에 9,000만 원, T에게 5,0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들은 2019. 2. 22. G, U, V, W(이하 'G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들 명의의 원고 주식 전부를 G 등에게 2억 7,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작성하였고, W의 대리인 및 G, U, V와의 사이에 '피고들은 G 등에게 원고 주식 지분 전부 및 법인을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원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2019. 2. 22.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2019. 2. 22.자 합의서는 피고들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상에 기재된 주식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바, 결국 피고들이 G 등에게 원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돈은 없다.

4) 피고들은 2019. 2. 22. 원고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G가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U, V, W이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5) 한편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H 역시 2019. 2. 27. G 등에게 자신 명의의 원고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한 후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경락자금 대출에 성공하자 피고들과 H으로부터 주식 및 임원직을 반환받은 것으로, 이는 피고들과 H이 처음부터 경락자금 대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편의상 원고 주주 명의를 이전받았음을 추단케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C의 1억 원 송금행위가 있는 2017. 11. 30.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경숙

판사박관형

판사이창건